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문직공무원 운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직시험위원회 폐지(안 제7조 및 제8조)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0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함.

다. 근무연수평정 적용 대상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확대(안 제15조)

근무연수평정 시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인정하도록 함.

라.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상 직렬·직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전직시험위원회)”를 “(전직시험의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장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2항”으로, “전직시험위원회”를 “전직시험”으로 한다.

②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4년”을 “3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또는 상당 계급”을 “이상의 계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	공업전문	일반기계	수석전문관	공업 전문관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전문	일반농업		농업 전문관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임업전문	산림조경		임업 전문관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전문	수의		수의 전문관
	해양수산전문	일반해양		해양수산 전문관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기상전문	기상		기상 전문관
		지진		
	보건전문	보건		보건 전문관
		방역		
	의료기술전문	의료기술		의료기술 전문관
	식품위생전문	식품위생		식품위생 전문관
	의무전문	일반의무		의무 전문관
		치무		
	약무전문	약무		약무

		전문관
간호전문	간호	간호 전문관
환경전문	일반환경	환경 전문관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전문	일반항공	항공 전문관
	조종	
	정비	
	관제	
시설전문	도시계획	시설 전문관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전문	방재안전	방재안전 전문관
전산전문	전산개발	전산 전문관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통신전문	통신사	방송통신 전문관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전문	방송무대기술	방송무대 전문관
	방송제작	
교정전문	교정	교정 전문관
보호전문	보호	보호 전문관
검찰전문	검찰	검찰 전문관
마약수사전문	마약수사	마약수사 전문관
출입국관리전문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전문관

철도경찰전문	철도경찰	철도경찰 전문관
행정전문	일반행정	행정 전문관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전문	직업상담	사회복지 전문관
세무전문	세무	
관세전문	관세	
사회복지전문	사회복지	
통계전문	통계	통계 전문관
사서전문	사서	사서 전문관
감사전문	감사	감사 전문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7조(전직) ① ----- ----- ----- ----- ----- ----- ---. ----- ----- ----- ----- ----- 제9조에 따른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전직시험위원회) ① 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소속 장관별로 전직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직시험의 위원 등) <삭제>
② 전직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③ 전직시험위원회 위원은 소속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명한다.

1. 2. (생략)

④ 전직시험위원회는 전직하려는 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다.

① 소속 장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제2항-----
----- 전직시험-----

--.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 3년 -----.

-----.

② (생 략)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② (생 략) ③ 근무연수평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⑤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이상의 계급</u> <u>(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u> <u>다)</u>----- --.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97